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과의

식품안전에 관한 양해각서

2011년 7월 14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간의  
식품안전에 관한 양해각서(MOU)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이하 “양측”으로 칭함)은,

평등, 상호주의,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측간 정보교류,  
경험공유, 식품 안전과 기준의 조화 촉진을 위해서,

또 식품안전과 기준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제 1 항 기본 원칙

양측은 본 합의에 따라 식품안전과 기준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의사를 확인한다.

## 제 2 항      협력 분야

양측은:

- 가. 식품안전 및 기준 개발과 관련, 서로의 관련 법 · 규정에 대한 정보와 기타 정보를 교환한다.
- 나.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기준 · 규정 · 위해평가 분야에서 협력한다.
- 다. 식품안전 및 기준 개발을 위한 위해평가활동 관련 정보를 교환한다.
- 라. 각 측은 재정 상황에 따라 심포지움을 개최하거나, 공동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 제 3 항      재원 부담

- 가. 각 측은 동 MOU에 따른 협력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 나.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지원 제공 시 발생 비용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하는 측이 부담한다.

#### 제 4 항      정보 공개

동 MOU에 따라 진행되는 협력활동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비밀 정보는 상대방이 서면으로 허가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제3자에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다.

#### 제 5 항      이전 해소

동 MOU의 해석 과 · 또는 실행에 있어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 제 6 항      유효기간과 종료

가. 동 MOU는 서명일에 발효되어 5년간 유효하다. 종료를 원할 시에는 6개월 전에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러한 종료의사 통보가 없으면 MOU는 자동으로 5년간 갱신된다.

나. 동 MOU는 양측의 서면 동의에 의해 수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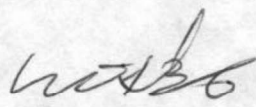
다. 동 MOU의 종료는 MOU 종료 통보 시점에 진행 중인 협력 활동의 지속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7 항      연락관

양측은 동 MOU의 이행과 관련한 의사소통을 위해 연락관을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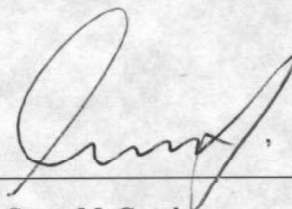
이 MOU은 2011년 7월 14일 호주 캔버라에서 국문과 영문 두 언어로 서명하였으며, 모든 문구는 동일하게 유효하다. 만약 해석상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영문본을 우선한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대표하여



노 연 홍  
청 장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을  
대표하여



Steve McCutcheon  
청 장